의 안 번 호	5065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신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출 연월일	2026. 9. 18.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신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5065

제출연월일 : 2026. 9. 18.
제 출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1. 제안이유

○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신산업 육성사업을「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연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사업별 출연개요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기관	출연금	출 연 근 거
	합 계		**11,775,250**	
1	세종연구개발 지원단 육성지원 사업	(재)세종 테크노파크	480,00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6조 ○『과학기술기본법』제8조, 제29조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조례』제14조
2	5극3특 초광역협력사업 (산업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2,160,00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4조 ○『산업기술혁신법』 제38조
3	5극3특 초광역협력사업 (중기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2,756,25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지역중소기업법』제11조 ○『중소기업기술혁신법』제9조, 제20조
4	4극3특 과학기술 혁신지원 사업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800,000	○『연구개발특구법』제58조의2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14조
5	AI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	(재)세종 테크노파크	180,00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6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재)세종 테크노파크	800,00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14조
7	세종 정보보호 지원센터 운영	(재)세종 테크노파크	90,00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14조
8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재)세종 테크노파크	4,509,00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법』제9조 ○『산업기술단지법』 제17조

3. 주요내용

1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 (출 연 금) 480,000천원 ※ 균특보조(국240,000천원 시240,000천원)

○ (출연기관) (재)세종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R&D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정책 기획, 네트워킹 등 지역 특화 정책 발굴 기획

* 세종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 (정책수립)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지역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 (조사·분석) 지역 연구개발사업 현황·성과 분석, 지역 혁신기관 조사·분석
- (정보구축) 통계자료, 기술·시장 정보 제공 및 성과확산
- (기획·발굴) 지역 R&D 신규 과제 발굴 및 사업 기획
- (네트워킹) 지역 현안 발굴과 정책기획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광역권 연계·협력 추진

○ (출연필요성) 우리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특화 정책 연구개발, 정부 공모사업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자료조사·분석부터 사업 기획·추진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

2 5극3특 초광역협력사업(산업부)

○ (출 연 금) 2,160,000천원(시비) ※ 국가직접지원(국비 5,040,000천원, 국7:시3)

○ (출연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내용)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 성장전략과 연계한 성장엔진 산업* 분야 앵커기업 중심 기술개발·인프라·인력양성의 R&D 패키지 지원

* 중부권: ①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②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③첨단 배터리, ④미래 방산·수송 시스템

- (기술개발) 앵커기업의 투자 및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협력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R&D 지원
- (인프라) 기업의 시험·분석·실증 등 현장 수요에 필요한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 (인력양성) 앵커기업과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성장엔진 아카데미·대학원 등 핵심 연구인력 및 현장인력(장비운용 등) 양성 지원

○ (출연필요성) 앵커기업 투자 유치 및 후속기업 집적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3 5극3특 초광역협력사업(중기부)

○ (출 연 금) 2,756,250천원(시비) ※ 국가직접지원(국비 2,756,250천원, 국5:시5)

○ (출연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내용)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 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① (R&D사업) 권역별 기업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 공모·지원

② (비R&D사업) 바이오분야 기업 성장 전주기 사업화 지원

- (기술확보) 유망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사전기획 지원
- (실증) 바이오헬스 제품·서비스 현장실증, 사용성·성능평가 및 수요처 매칭
- (인허가·제품화) 시험평가·인허가·인증 및 제품 고도화·사업화 지원
- (인력양성) 기업수요 기반 실무교육, 현장실습·채용연계

○ (출연필요성)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 및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4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 (출 연 금) 800,000천원(시비) ※ 국가직접지원(국비 3,200,000천원(잠정), 국8:시2)

○ (출연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사업내용) 권역별 중점기술분야* 중심 지역자율 R&D 과제 기획·추진

* 중부권 중점기술분야(권역별 3개): 차세대반도체, 첨단바이오, 첨단모빌리티

- (기술개발) 중부권 3대 중점기술 분야(반도체, 첨단바이오, 첨단모빌리티)의 미래유망 원천기술 R&D 및 딥테크 지역 확산 R&D 추진
- (실증·사업화) 기술개발-실증·검증-사업화가 순환하는 전주기 지역 R&D 실현

○ (출연필요성) 수도권 중심의 중앙 주도 R&D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써 수도권 제외 전 권역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임

- AI·로보틱스, 바이오, 반도체소부장 등 市 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산업 거점 기반 및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추진에 따라 관내로 많은 국비(사업비 80%) 유입 가능

5 AI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

○ (출 연 금) 180,000천원 ※국가직접지원(국비 1,210,000천원, 민간 496,000천원, 국64.2 : 시9.5 : 민간26.3)

○ (출연기관) (재)세종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화장품 제조공정의 재작업 최소화를 위한 생산·충진·포장 등 공정별 AI 자동 제어로 모듈형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기술개발) 화장품 원료·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특성 예측, 품질 검사, 충진조건 설정 및 생산공정 최적화 등 자율제조 기술 개발
- (실증·확산) 생산 공장에 개발기술을 적용·검증하고, 재작업률 감축 등 성과를 기반으로 제조기업 확산을 위한 표준모델 구축

○ (출연필요성)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AI 기반 제조 시스템의 지능화·생산효율화를 통해 관내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산업의 AI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 추진 필요

6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 (출 연 금) 800,000천원(시비) ※ 국가직접지원(국비 800,000천원, 국5:시5)

○ (출연기관) (재)세종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지역특화산업 연계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기업육성, 인재양성 등)

- (기업육성)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특화산업 기술공급 매칭, 정보보호기업 R&D 및 사업화 지원, 앵커시설 입주기업 유치(年 9개사)
- (인력양성) 신규인력 양성교육 및 채용연계 실무교육(年 30~60명), 지역 특화산업 재직자 대상 정보보호 내재화 교육(年 20~40명)
- (인프라 구축)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및 앵커시설·테스트베드 구축
- (융합 지원) 지역특화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컨설팅·솔루션 지원 등), 충청권 정보보호주간 행사 개최

○ (출연필요성)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충청권 4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주관기관: 세종TP)하는 사업으로서, 세종·충청권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7 세종 정보보호 지원센터 운영

○ (출 연 금) 90,000천원(시비) ※ 국가직접지원(국비 227,200천원(잠정), 국7:시3)

○ (출연기관) (재)세종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활동 직접 지원(진단·컨설팅 등)

- (중소기업 지원) 지역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컨설팅, 맞춤형 보안 제품 도입 지원,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보안 서비스 지원
- (정보보호협의체) 지역 정보보호 현안 및 지역전략산업 협력사업 논의
- (인식 제고)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 개최

○ (출연필요성) 지역센터 구축을 통해 세종 중소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보안지원 강화, 충청권 클러스터 사업과의 시너지 기대

구분	정보보호 클러스터	정보보호 지원센터
핵심기능	지역 정보보호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역 기업의 정보보호 컨설팅·기술지원
지원대상	**정보보호·사이버보안 기업(공급기업)**	**일반 중소기업(수요기업)**
사업예시	보안기업 R&D 등 지원, 전문인력 양성, 보안시스템 검증·테스트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진단, 정보보호 컨설팅, 기업 보안담당자 교육

8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 (출 연 금) 4,509,000천원 ※ 균특보조(국3,113,000천원 시1,396,000천원)

○ (출연기관) (재)세종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우리 시 특화산업의 고도화 및 자생적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비R&D) 등 사업 지원

- (R&D) 지역 주력산업(첨단반도체실증, 디지털헬스바이오, 지능형모빌리티·로봇시스템) 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 (비R&D) 지역 주력산업분야 관내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디자인, 마케팅, 역량강화 등 지원
-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 정책기획, 성과분석, 기술교류 등을 통한 지역산업육성전략 마련 및 기업성장 로드맵 구축

○ (출연필요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참고자료	사업별 세부 출연 계획(관련 문서, 법령 발췌)

1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

출연금액	480,000천원
출연기관	○ 기 관 명 : (재)세종테크노파크 ○ 대 표 : 양현봉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95 - 조 직 : 2단 2센터 1실 2부설센터 12팀 - 주요사업 : 세종시 기업·산업·과학기술·콘텐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수행 - 설립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및 산출내역	○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 ○ 사업내용 : 지역 R&D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R&D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정책기획,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역 R&D 기반 사업 추진 ※ 주요사업 : 지역과학기술 정책사업의 발굴기획, 정부 공모사업 대응, 지역 과학기술 확산 등 ○ 출연금액 : 480,000천원 ※ 균특보조(국5:시5) - 인건비(참여인력 8명) : 235,000천원 -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조사·분석비, 인쇄비, 교육훈련비 등) : 182,400천원 - 간접비(기관공통경비) : 62,600천원
근거·법령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2조, 제16조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제29조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4조
출연 필요성	○ 지역 R&D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조사·분석·기획 전담기관 지정 및 육성 필요 ○ 지역특화 산업 정책 및 R&D사업 기획으로 중앙부처공모사업 대응 및 산업 육성·진흥 기반 마련 필요

주관부서	미래산업과	주무관	담당	전화
		이현아	미래산업팀장 김선경	300-2214

참고1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4조(진흥사업)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과학기술 인력유치사업 및 양성사업

참고2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수행관리 가이드라인 공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 수행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1. 관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의 예산 계정이 변경*되어 사업 추진 환경이 변화함을 고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사업 수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지방비 확보 확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3.3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지원계정 → 지역자율계정

붙임 : 2026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1부.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

수신자 대전광역시장(전략산업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미래산업과장),충청북도지사(AI전략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미래산업과장),광주광역시장(미래산업총괄관),전라남도지사(연구바이오산업과장),대구광역시장(미래혁신정책관),경상북도지사(미래첨단산업과장),부산광역시장(연구개발과장),울산광역시장(AI산업전략과장),경상남도지사(산업정책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전략산업과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미래성장과장),서울특별시장(경제정책과장),경기도지사(디지털혁신과장),인천광역시장(산업창업정책과장)

시무관 김민성 지역과학기술진 전결 2026. 3. 19.
협조자 총괄과장 박정실

시행 지역과학기술진흥과-752 (2026. 3. 19.) 접수 미래산업과-1183 (2026. 3. 19.)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6층 (어진동) / http://www.msit.go.kr
전화번호 044-202-4741 팩스번호 044-202-6027 / mskim98038@msit.go.kr / 비공개
생각은 창의적으로, 행정은 적극적으로!

참고3 **'26년 세종연구개발지원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세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5월)

1. 관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다.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과-1901(2026.4.28., 2026년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2.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세종)" 세부사업 내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내역사업의 "세종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에 대한 2026년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을 통보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세종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328,000	-	240,000	88,000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_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5월, 세종) 1부.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

수신자 기획예산처장관(과학기술혁신예산과장), 행정안전부장관(재정협력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미래산업과장)

지역과학기술진흥과-1685 (2026. 6. 8.)

사무관 김민성 총괄과장 박병실

협조자

시행 지역과학기술진흥과-1685 (2026. 6. 8.) 접수 미래산업과-2467 (2026. 6. 8.)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6층 (어진동) / http://www.msit.go.kr

전화번호 044-202-4741 팩스번호 044-202-6027 / eskim6833@msit.go.kr / 대국민 공개

2 5극3특 초광역협력사업(산업부)

<table>
<tr><td>출연금액</td><td>2,160,000천원</td></tr>
<tr><td>출연기관</td><td>○ 기 관 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 표 : 전윤종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 조 직 : 3부원장 11본부 30실 1단
- 주요사업 :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역산업 혁신 기술개발사업 등
- 설립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td></tr>
<tr><td>사업개요
및
산출내역</td><td>○ 사업기간 : 2027. 1. ~ 2031. 12.
○ 사업내용 :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 성장전략과 연계한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분야 앵커기업 중심의 R&D 과제 기획·추진
○ 출연금액 : 2,160,000천원 ※ 국가직접지원사업(국비 70%, 시비30%)
※ 추후 지역별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실제 분담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비 증감분은 조정 예정
○ 사업비 구조(잠정) ※ '27~'31년 사업비 변동 가능
(단위: 억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중부권</th><th colspan="3">세종(잠정)</th></tr>
<tr><th>국비</th><th>지방비</th><th>총계</th><th>국비</th><th>시비</th><th>총계</th></tr>
<tr><td>2027</td><td>201.6</td><td>86.4</td><td>288</td><td>50.4</td><td>21.6</td><td>72</td></tr>
<tr><td>2028</td><td>201.6</td><td>86.4</td><td>288</td><td>50.4</td><td>21.6</td><td>72</td></tr>
<tr><td>2029</td><td>201.6</td><td>86.4</td><td>288</td><td>50.4</td><td>21.6</td><td>72</td></tr>
<tr><td>2030</td><td>201.6</td><td>86.4</td><td>288</td><td>50.4</td><td>21.6</td><td>72</td></tr>
<tr><td>2031</td><td>201.6</td><td>86.4</td><td>288</td><td>50.4</td><td>21.6</td><td>72</td></tr>
<tr><td>합계</td><td>1,008</td><td>432</td><td>1,440</td><td>252</td><td>108</td><td>360</td></tr>
</table></td></tr>
<tr><td>근거·법령</td><td>○「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4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td></tr>
<tr><td>출연
필요성</td><td>○ 앵커기업의 투자수요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인프라, 인력양성의 R&D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 앵커기업 투자 유치 및 후속기업 집적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 출연대상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수행(기획,평가,관리등)을 전담</td></tr>
</table>

주관부서	미래산업과	주무관	담당	전화
		송은혜	인공지능신산업팀장 김선경	300-2213

참고 **관련법령 발췌**

○ 지방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의 육성 또는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3 5극3특 초광역협력사업(중기부)

<table>
<tr><td>출연금액</td><td>2,756,250천원</td></tr>
<tr><td>출연기관</td><td>○ 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대 표 : 김영신
○ 일반현황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 조 직 : 6본부 1추진단 22실 7팀
- 주요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 조성,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 관리 등
- 설립근거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td></tr>
<tr><td>사업개요
및
산출내역</td><td>○ 사업기간 : R&D 2027. 1. ~ 2027. 12. / 비R&D 2027. 1. ~ 2030. 12.
○ 사업내용 :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 성장전략과 연계한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중심의 R&D사업 및 비R&D사업(사업화 지원) 과제 기획·추진
○ 출연금액 : 2,756,250천원 ※ 국가직접지원사업(국비 50%, 시비50%)
- 기술개발(R&D) : 500,000천원
- 사업화(비R&D) : 2,256,250천원
※ 추후 지역별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실제 분담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비 증감분은 조정 예정
○ 사업비 구조(잠정) ※ ’27~’31년 사업비 변동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R&D</th><th colspan="3">비R&D</th></tr>
<tr><th>국비</th><th>시비(세종)</th><th>총계</th><th>국비</th><th>시비(세종)</th><th>총계</th></tr>
<tr><td>2027</td><td>500</td><td>500</td><td>1,000</td><td>2,256.25</td><td>2,256.25</td><td>4,512.5</td></tr>
<tr><td>2028</td><td colspan="3" rowspan="3"></td><td>3,206.25</td><td>3,206.25</td><td>6,412.5</td></tr>
<tr><td>2029</td><td>2,968.75</td><td>2,968.75</td><td>5,937.5</td></tr>
<tr><td>2030</td><td>2,968.75</td><td>2,968.75</td><td>5,937.5</td></tr>
<tr><td>합계</td><td>500</td><td>500</td><td>1,000</td><td>11,400</td><td>11,400</td><td>22,800</td></tr>
</table></td></tr>
<tr><td>근거·법령</td><td>○「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중소기업법」 제11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20조</td></tr>
<tr><td>출연
필요성</td><td>○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과 지역주력산업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 및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 출연대상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사업수행(기획,평가,관리등)을 전담</td></tr>
</table>

주관부서	미래산업과	주무관	담당	전화
		송은혜	인공지능신산업팀장 김선경	300-2213

참고 **관련법령 발췌**

○ 지방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성장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중소기업법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6.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7.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1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3.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4.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5.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6.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table>
<tr><td>출연금액</td><td>800,000천원</td></tr>
<tr><td>출연기관</td><td>○ 기 관 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대 표 : 정희권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조 직 : 5본부 5실 11팀 * 5개 지역본부 제외
- 주요사업 : 연구개발특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육성·관리 대학 및 출연(연)의 공공기술 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설립근거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설립)</td></tr>
<tr><td>사업개요
및
산출내역</td><td>○ 사업기간 : 2026. 1. ~ 2030. 12.
○ 사업내용 : 권역별 중점기술분야* 중심 지역자율 R&D 과제 기획·추진
* 중부권 중점기술분야(권역별 3개): 차세대반도체, 첨단바이오, 첨단모빌리티
○ 출연금액 : 800,000천원 ※ 국가직접지원(국비 3,200,000천원(잠정), 국8:시2)
- 중부권 R&D 사업단(KAIST)에서 추진 예정인 17개 세부과제 공모('26년 9~10월)에서 세종시 관내 기업 및 기관(대학)이 선정될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한 지방비 지원 필요
※ 중부권 R&D 사업단(KAIST)에서는 지방비 분담액 1/4(25%) 14.4억원을 확보토록 권고
- 중부권 과제공모결과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실제 분담액은 변동, 사업비 증감액은 '27년 추경에서 조정 예정
- 사업비 구조(잠정 예상액) ※ '28~'30년 예산액 변동 가능
(단위: 억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중부권</th><th colspan="3">세종(잠정)*</th></tr><tr><th>국비</th><th>지방비</th><th>총계</th><th>국비</th><th>시비</th><th>총계</th></tr><tr><td>2026</td><td>131.06</td><td>-</td><td>131.06</td><td>18.15</td><td>-</td><td>18.15</td></tr><tr><td>2027</td><td>231.06</td><td>57.77</td><td>288.83</td><td>32.00</td><td>8.00</td><td>40.00</td></tr><tr><td>2028</td><td>231.06</td><td>57.77</td><td>288.83</td><td>32.00</td><td>8.00</td><td>40.00</td></tr><tr><td>2029</td><td>231.06</td><td>57.77</td><td>288.83</td><td>32.00</td><td>8.00</td><td>40.00</td></tr><tr><td>2030</td><td>231.06</td><td>57.77</td><td>288.83</td><td>32.00</td><td>8.00</td><td>40.00</td></tr><tr><td>합계</td><td>1,055.30</td><td>231.08</td><td>1,286.38</td><td>146.15</td><td>32.00</td><td>178.15</td></tr></table>* 중부권 사업비의 13.85%, 17개 공모과제 중 2~3개(11.8~17.7%) 선정 시 매칭비율</td></tr>
<tr><td>근거·법령</td><td>○ 『연구개발특구법』 제58조의2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4조</td></tr>
<tr><td>출연
필요성</td><td>○ 수도권 중심의 중앙 주도 R&D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써 수도권 제외 전 권역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임
○ AI·로보틱스, 바이오, 반도체소부장 등 市 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산업 거점 기반 및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추진에 따라 관내로 많은 국비(사업비 80%) 유입 가능</td></tr>
</table>

주관부서	미래산업과	주무관	담당	전화
		정윤강	미래산업팀장 김선경	300-2215

참고1 **중부권 4극3특 사업 추진 현황**

□ 사업 개요

○ **(기간/예산)** '26~'30년(5년간) / **'26년 중부권 총 131억원**(전액국비)

※ '27~'30년(4년간) 중부권 매년 289억원(국 231, 시·도 58) 잠정

○ **(사업목적)** 권역별 중점기술분야 중심 지역자율 R&D 과제 기획·추진

○ **(세종시 기대효과)** 지역 내 R&D 역량 축적 및 산학연 생태계 조성, AI·로보틱스, 바이오, 반도체소부장 등 市 전략산업 거점기반 강화

<사업 추진 체계도>



□ 추진 경과

○ **('25.12)** KAIST 및 4개 시·도 협의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첨단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를 중점기술분야로 선정

○ **('26.3)** 중점기술 연관 보유기술 역량조사 및 기업 참여의향 수요조사

○ **('26.5)** 과기부 컨설팅 반영하여 **중부권 17개 과제**(차세대반도체 6개, 첨단바이오 5개, 첨단 모빌리티 6개) 기획·제출

※ 우리 시는 첨단바이오 2개 과제 기획(바이오 혁신 신약 개발, AI 기반 정밀의료 디지털 플랫폼 구축)

○ **('26.6)** 중부권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 향후 계획

○ 중부권 분야별 R&D 과제공모(KAIST, '26.9.), 참여기업 선정 지원

○ '27년 예산확보(지방비 20%) 대응 및 분담방법 세부사항 협의('26.9.~)

참고2 **관련법령 발췌**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나. 대학·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라. 교수·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사업화 지원 인력·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4조(진흥사업)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과학기술 인력유치사업 및 양성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연계 협력사업
5. 과학기술협력 국내·외 교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AI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

출연금액	180,000천원
출연기관	○ 기 관 명 : (재)세종테크노파크 ○ 대 표 : 양현봉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95 - 조 직 : 2단 2센터 1실 2부설센터 12팀 - 주요사업 : 세종시 기업·산업·과학기술·콘텐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수행 - 설립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및 산출내역	○ 사업기간 : 2025. 9. ~ 2029. 12. - (1단계) 2025.9.1 ~ 2027.3.31(2년) / (2단계*) 2027.4.1 ~ 2029.12.31(3년) * 2단계('27년)부터 3년간 매년 180백만원 시비 매칭 ○ 사업내용 : 화장품 제조공정에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검사·충진·포장 등 공정의 자동화·지능화를 구현하고, 재작업 최소화 및 생산 효율화를 통해 K-뷰티 제조 경쟁력 강화 ○ 출연금액 : 180,000천원 ※ 국가직접지원(국64.2 : 시9.5 : 민간26.3) ※ '27년 총사업비 1,886,000천원(국비 1,210,000천원, 시비 180,000천원, 민간496,000천원) - 인건비(참여인력 1인) : 5,000천원 - 연구개발비(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 : 167,000천원 - 연구활동비(연구수행 DB사용료, 전문가 활용비 등) : 6,000천원 -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여비, 간접비 등) : 2,000천원
근거·법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출연 필요성	○ (추진경과) 산업통상부는 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해 '30년까지 AI팩토리* 500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제조현장의 AI 적용·확산을 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 * AI 기술 기반 로봇장비 등을 제조공정에 결합하여 생산공정의 자율화를 추진하는 사업 -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된 산업부 공모(「2025년도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 개발사업」) 과제에 ㈜한국콜마(화장품앵커기업)가 선정('25.9.)되어, 사업 추진 중 ※ (선정조건) 공모시 국비의 10~30% 지방비 지원시 가점('27년부터 3년간 年180백만원 지원) ○ (市) 해당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사업선정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지방비 지원 확약서 제공('25.7월, 국비10%인 5.4억) 및 「市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보고('25.11월) * 지역내 3개 계열사 운영, 1,908명 고용, 연간 30여억원 지방세 납부 등 ○ (기대효과) 관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및 재작업 감소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식품분야 공정 효율화 기술 확산을 통한 산업 기반 고도화 가능

주관부서	미래산업과	주무관	담당	전화
		정윤강	미래산업팀장 김선경	300-2215

참고1 AI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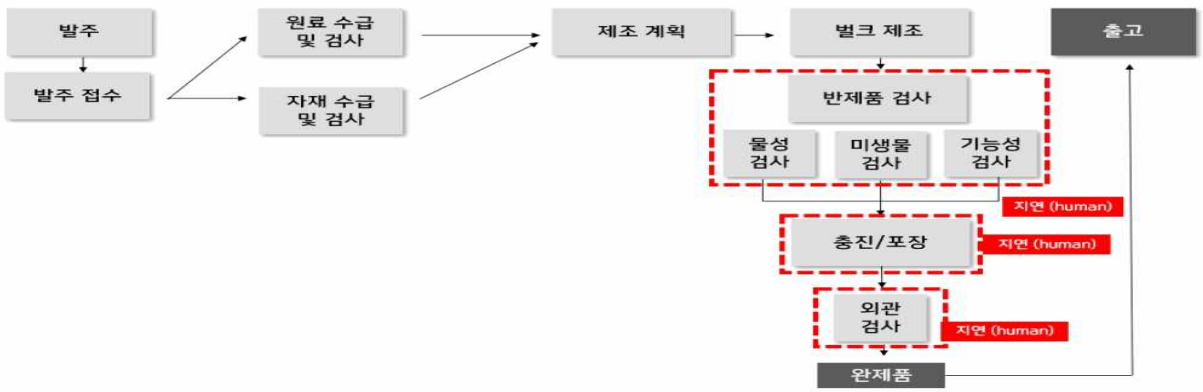
□ 추진체계 및 흐름

기관명	구분	기관유형	주요 역할 및 수행내용
한국콜마㈜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 사업 총괄 및 35년간 축적된 화장품 제조데이터 제공 ○ 화장품 제형의 점도·유동 특성을 예측하는 AI 모델 알고리즘 설계 및 현장 실증(화장품 생산라인)
㈜인이지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AI 공급 전문기업)	○ 설비·교반기* 편차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설계 * 화장품 원료를 섞어주는 제조장비 ○ AI 기반 생산 일정·공정 자동계획 및 전 공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개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기관 (전문연)	출연연구기관	○ 미생물 배양 이미지 데이터셋 구축(촬영·정제·이미지별 분류정보 입력) ○ 시료 수득 및 샘플링·이송 자동화 시스템 설계·개발
세종테크노파크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자체 출연기관	○ 화장품 및 관련 업종 표준 데이터 플랫폼 운용·확산 모델 개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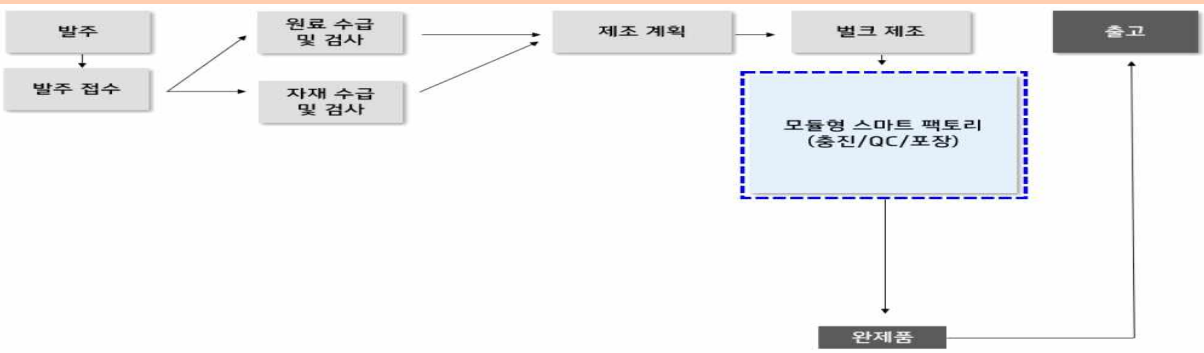
학습데이터 구축	▶	AI모델 플랫폼 설계	▶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	현장 설치·고도화	▶	성과 평가·실증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 기술개발 전후 비교

■ 기술개발 전 생산 공정표 (수작업 중심)



■ 기술개발 후 공정표 (AI기술 자동화 생산공정)



참고2 **관련법령 발췌**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육성
3.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산업 실증 시험대(테스트 베드)
5. 인공지능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 협력 지원
6. 인공지능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7. 인공지능융합 사업 모델 개발
8.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9.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10.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11.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6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금액	800,000천원
출연기관	○ 기 관 명 : (재)세종테크노파크 ○ 대 표 : 양현봉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95 - 조 직 : 2단 2센터 1실 2부설센터 12팀 - 주요사업 : 세종시 기업·산업·과학기술·콘텐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수행 - 설립근거법령 : 「민법」 제32조,「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및 산출내역	○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 ○ 사업내용 :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전략*, 10개 실행과제 추진 * 정보보호 기업육성, 정보보호 인재양성, 정보보호 기반조성, 정보보호 지역특화산업 융합 ○ 출연금액 : 800,000천원 ※ 국가직접지원사업(국5:시5) - 인건비(참여인력 6명) : 125,000천원 - 일반용역비(유망기업 발굴 및 기업지원 등) : 125,000천원 - 연구용역비(플랫폼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72,500천원 - 관리용역비(무인경비 등 시설물 관리) : 15,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신규인력 양성, 기업지원) : 145,000천원 -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여비, 간접비 등) : 317,500천원
근거·법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4조
출연 필요성	○ 정보보호 기업 및 인력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기반의 정보보호 산업 거점 필요, 지방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해소 ○ 정보보호 산업의 중부권 특화를 통한 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충청권 특화산업과 정보보호 산업의 융합 지원으로 상호보완 생태계 구축

주관부서	미래산업과	주무관	담당	전화
		정윤강	미래산업팀장 김선경	300-2215

참고 **관련법령 발췌**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4조(진흥사업)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과학기술 인력유치사업 및 양성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연계 협력사업
5. 과학기술협력 국내·외 교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세종 정보보호 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액	90,000천원
출연기관	○ 기 관 명 : (재)세종테크노파크 ○ 대 표 : 양현봉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95 - 조 직 : 2단 2센터 1실 2부설센터 12팀 - 주요사업 : 세종시 기업·산업·과학기술·콘텐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수행 - 설립근거법령 : 「민법」 제32조,「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및 산출내역	○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 ○ 사업내용 :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활동 직접 지원* * 컨설팅 및 맞춤형 보안제품 도입 지원, 구독형 보안서비스 지원, 세미나 개최 등 ○ 출연금액 : 90,000천원 ※ 국가직접지원(국비 227,200천원(잠정)), 현물 3,600천원 - 인건비(참여인력 6명) : 30,000천원 - 회의행사비(정보보호협의회 운영 등) : 8,000천원 - 연구용역비(보안교육·세미나 등 정보보호 역량강화 용역) : 25,000천원 -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여비 등) : 27,000천원
근거·법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4조
출연 필요성	○ 중소기업은 사이버보안에 취약하지만, 지역의 정보보호 기반 및 전문 인력은 열악하여 공공 차원에서 정보보호 활동 지원 필요 ○ 과기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 확대 구축 계획('26년 전국 10개소→16개소) ○ 세종 지역센터 구축을 통해 세종 중소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보안지원 강화,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과의 시너지 기대

주관부서	미래산업과	주무관	담당	전화
		정윤강	미래산업팀장 김선경	300-2215

참고 **관련법령 발췌**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4조(진흥사업)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과학기술 인력유치사업 및 양성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연계 협력사업
5. 과학기술협력 국내·외 교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8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액	4,509,000천원
출연기관	○ 기 관 명 : (재)세종테크노파크 ○ 대 표 : 양현봉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95 - 조 직 : 2단 2센터 1실 2부설센터 12팀 - 주요사업 : 세종시 기업·산업·과학기술·콘텐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수행 - 설립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및 산출내역	○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 ○ 사업내용 : 우리시 주력산업* 기업의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비R&D) 지원 * 첨단반도체실증, 디지털헬스바이오, 지능형 모빌리티·로봇시스템 ○ 출연금액 : 4,509,000천원 ※ 국 3,113,000천원, 시 1,396,000천원(7:3) - 연구개발(R&D) : 1,350,000천원(관리기관 운영비(60,000천원) 포함) - 사업화(비R&D) : 3,159,000천원
근거·법령	○「지방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출연 필요성	○ 13개 비수도권 시·도가 지역별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주관부서	미래산업과	주무관	담당	전화
		송은혜	인공지능신산업팀장 김선경	300-2213

참고1 '27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소계	구 분	국비	지방비	소계	매칭비율
R&D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902	388	1,290	7:3
	- 주력산업생태계구축	703	303	1,006	
	- 지역기업역량강화	199	85	284	
비R&D	□ 지역주력산업성장지원	2,211	948	3,159	7:3
	ㅡ 성장사다리	814	349	1,163	-
	ㅡ 지역특화프로젝트 2.0	280	120	400	-
	- 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강화	1,117	479	1,596	-
□ **지역전담기관 R&D 기획평가비*** ※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국비 별도 편성		0	60	60	-
합 계		3,113	1,396	4,509	-

※ 중기부 담당자로부터 별도(메일) 안내받은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반영

* **(기획평가비)** 중기부 공문으로 안내받은 예산 배정안 반영 :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1632(2026.8.12.)

참고2 관련법령 발췌

○ 지방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성장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관 실·과		미래산업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미래산업과장 권오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인공지능신산업팀장 김선경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송은혜(044-300-2213) 지방행정주사보 정윤강(044-300-2215) 지방행정서기 이현아(044-300-2214)